

계약직 사무보조원 임용예정자 운용지침

문서번호	BSKS-3-1-30
제정일자	2011.10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수	1/2

2011.10.01.제정 2011.12.30.개정 2012.03.01.개정

2014.06.01.개정 2017.09.01.개정

2020.02.12.개정

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- 이 지침은 부산경상대학교의 계약직 사무보조원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1. 대상 : 계약직 사무보조원 임용예정자(행정부처, 부속기관, 학과(계열), 부설기관, 직속기관 및 기타)
- 2. 임용예정자 임용 및 수습기간 중 임금
 - 가. 졸업예정자
 - 1) 임용: 정식 임용은 졸업 후 매년 3월1일 또는 9월1일로 하고 근무시작일로부터 정식 임용일 까지는 해당부서 및 학과(계열)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운용한다. 근로장학생의 근무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한다. <개정 2020.02.12.>
 - 2) 근로 장학생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 : 근로장학생의 임금은 정식 임용일 1개월 전 100%로 지급한다.<개정 2017.09.01., 2020.02.12..>
 - 3) 삭제 <2017.09.01.>
 - 나. 졸업자 삭제<2011.12.30.>
- 3. 인수·인계 기간
 - 가. 학과(계열) 직원 : 인수·인계 기간은 최대 7일 이내로 하며 근로비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함.
 - 나. 행정부서 직원 : 인수·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며 근로비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함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.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



계약직 사무보조원 임용예정자 운용지침

문서번호	BSKS-3-1-30
제정일자	2011.10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수	2/2

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"조교 임용예정자 운영지침"을 "계약직직원 임용예정자 운영지침"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함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